

# 검 토 보 고 서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건 명   |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      |             |
| 의안번호  | 제102호                       | 제 출 자 | 논산시장        |
| 제 출 일 | 2022. 8.19.                 | 회부연월일 | 2022. 8.19. |

## 1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자활기금 존속 기한 규정이 폐지되고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의 자활기금 존속기한(22.12.31)을 폐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. (안 제1조, 안 제3조 제4항, 안 제4조 제1항, 안 제9조)
- 나. 자활기금 존속기한 폐지(조례 제819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)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7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자활기금 존속기한 규정이 폐지되고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제819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“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” 는 규정을 삭제함.

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 개정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의 자활기금 존속기한(22.12.31)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제159조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 4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6 및 18조의7,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, 제26조의4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